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8회 제2차 정례회

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【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11.

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【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】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.

도시환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【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】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주차관리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검토기간: 2024. 11. 6. ~ 11. 11.

2. 제안이유

- 두류역 서한포레스트(두류동 138-2번지 일원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원룸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취득대상 현황

구 분			2024년			합 계			비 고
			건 수	면 적	금 액	건 수	면 적	금 액	
취 득	기부채납	토지 (주차장)	3	629.3	1,041	3	629.3	1,041	공시지가 및 순공사비 반영
		기타	5	-	44	5	-	44	

나. 추진배경

- 두류동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(승인권자: 대구시)
-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

다. 추진경과

- '21. 4월: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승인 고시
- '23. 7.~'24. 3월: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협의(區↔조합)
- '24. 6.~10월: 부지정리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(조합), 최종점검(區)

라. 향후계획

- '21. 11.~12월: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
- '24. 12월: 공영주차장 기부채납
- '25. 1월: 주차장 개장(예정)

4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두류동 138-2번지 일원 서한포레스트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이 조성한 공영주차장 3개소 등을 기부채납 받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임.
-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조건으로 승인된 서한포레스트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인 주택조합이 사업부지 인근에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, 취득대상은 토지 3필지, 면적 629.3㎡ 주차면수 총 22면인 공영주차장 3개소와 상록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인 파고라 2개, 운동기구 3개를 2024. 12월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계획임.

- 따라서 본 계획은 두류동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사업 주체로부터 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3개소 등을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², EA, 백만원)

구 분			2024년			합 계			비 고
		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
취 득	기부채납	토지 (주차장)	3	629.3	1,041	3	629.3	1,041	공시지가 및 순공사비 반영
		기타	5	-	44	5	-	44	

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주차장특별회계

(단위: m², EA, 백만원)

연번	재 산 표 시	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
	구분	지목	소재지(지번)	면적				
			계	629.3	862			
1	토지	대	두류동 120-1	251.4	361	2024	기부채납	두류동 지역주택조합 소유 ※ 공사비 제외 공시지가 반영
			두류동 141-11	195.0	238			
			두류동 143-13	182.9	219			
2	기타 (휴게시 설, 운동기구)	-	-	-	44			상록어린이공원 내 운동기구(3EA), 휴게시설(2EA)

붙임 2

위치도 및 현장 사진



○ 두류1·2동 5공영
(9면)



○ 두류1·2동 6공영
(7면)



○ 두류1·2동 7공영
(6면)

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